

속초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3

제출년월일 : 1993. 5.

제 출 자 : 속 초 시 장

1. 제 안 사 유

- 시에서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동에 위임한 사무가 개별법령의 개정및 폐지와 총무처에서 고시한 민원사무처리기준과의 불부합등으로 위임사무중 일부를 삭제하기 위한 개정임.

2 주 요 골 자

○ 삭 제 내 용 (안 제2조중 별표)

- 주민등록에관한 사무와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 광고물등 설치및 표시 또는 살포에 대한 신고
- 종묘상 등록
- 비료판매업 등록
- 계량기관매업 등록
- 자가용전기공작물 보안담당자 선·해임신고
- 이·미용업소 영업의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 농촌연료 채취지역으로 지정된 산림안의 임목의 벌채신고 및 신고필증 교부
- 상수도 사용량의 검침과 수도사용료의 부과징수
- 바다면적의 합계가 50 ㎡ 이내의 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신고
- 농어업용 소규모 주택, 축사 또는 창고로서 건축법시행령에서 정한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신고

3. 참 고 사 항

- 강원도 법무 02124 ~ 98 호('93. 3. 24) 로 정비안 시달 ————— 별 첨
- 입 법 예 고 ————— '93. 4. 8 ~ 4. 28
- 시정조정위원회 부의 ————— '93. 4. 29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

속초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 표 】 위임사무명중 제1호, 제10호, 제13호, 제14호, 제15호, 제16호, 제20호, 제21호, 제22호, 제26호, 제27호, 제28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		1. (삭 제)	
제2호 내지 제9호 (생 략)		제2호 내지 제9호 (현행과 같음)	
10. 광고물등 설치 및 표시 또는 살포에 대한 신고		10. (삭 제)	
제11호 내지 제12호 (생 략)		제11호 내지 제12호 (현행과 같음)	
13. 종묘상 등록		13. (삭 제)	
14. 비료판매업 등록		14. (삭 제)	
15. 계량기판매업 등록		15. (삭 제)	
16. 자가용 전기공작물 보안담당자 선·해임신고		16. (삭 제)	
제17호 내지 제19호 (생 략)		제17호 내지 제19호 (현행과 같음)	
20. 주민등록과태료 부과징수		20. (삭 제)	
21. 이·미용업소 영업의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21. (삭 제)	
22. 농촌연료 채취지역으로 지정된 산림안의 임목의 벌채신고 및 신고필증 교부		22. (삭 제)	
제23호 내지 제25호		제23호 내지 제25호 (현행과 같음)	
26. 상수도사용량의 검침 및 수도사용량의 부과, 징수		26. (삭 제)	
27.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이내의 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 신고		27. (삭 제)	
28. 농어업용 소규모주택, 축사 또는 창고로서 건축법시행령에서 정한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신고		28. (삭 제)	